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2월호

발행일 | 2026년 2월 27일

In Focus

- + 금융위, 회계 및 감사 품질 제고 방안 발표..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퇴출하고 감사인 선정 시 이해충돌 차단장치도 도입 [\(바로가기\)](#)
- + 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최초 도입...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바로가기\)](#)
- + 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30조 이상 대형 상장사 FY27부터 공시 의무화 [\(바로가기\)](#)
- +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협 동향 전망 보고서 발표.. '26년엔 AI 이용한 사이버 위협 기승 전망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융위, 회계 및 감사 품질 제고 방안 발표...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퇴출하고 감사인 선정 시 이해충돌 차단장치도 도입	4
	2. 자본시장	
	▪ 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최초 도입...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6
	▪ 국회, '토큰증권' 도입 위한 개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7
	▪ 금융위·금감원,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허용	8
	▪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 개최...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 목표	9
	▪ 금융위·금감원,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 대상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10
	3. ESG·지속가능성	
	▪ 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30조 이상 대형 상장사 FY27부터 공시 의무화	11
	▪ 상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자사주 소각 1년 이내 의무화	12
	▪ 환경부, CBAM 도입 지원방안 발표...자문 및 설비 투자 제공 등 15건 포함	13
	4. 기술·디지털	
	▪ 과기정통부, 사이버위협 동향·전망 보고서 발표...'26년엔 AI 이용한 사이버 위협 기승 전망	14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지원 위해 FAQ 배포	15

02 | 해외 업데이트 16

1. 해외 일반

- 영국 FRC, '24년 회계감사시장 현황 분석...감사보수 지속 성장세 및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품질 격차 관찰 17
- OECD/G20,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 발표...각국 자체 최저한세 적용 시 면제 가능 19

2. ESG·지속가능성

-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확정 20

3. 기술·디지털

- 싱가포르, 스스로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거버넌스 모델 제시...AI 자율성 관리 가능한 범위로 제한 강조 22

03 | 주목할 간행물 23

01

국내 업데이트

금융위, 회계 및 감사 품질 제고 방안 발표...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퇴출하고 감사인 선정 시 이해충돌 차단장치도 도입 In Focus

2월 4일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지시하는 회사 관계자는 최장 5년간 모든 상장사에서 퇴출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상장사뿐 아니라 대형 비상장사인 경우에도 감사인 직권 지정¹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 제재와 외부감사 독립성 제고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 결과 마련된 이번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회계부정 지시자(임원 및 실소유주)에 대한 시장 퇴출 ▲부실감사 페널티 부과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대형 회계법인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로 요약됨.

배경

-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내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 "금융위,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내년 상반기 '회계부정 엄정 제재' 시행 시 과징금 회사 1.5배·개인 2.5배 증가 예상" 참고)
- 이번 발표는 그 후속 대책으로, 회계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중 특히 회계부정 제재 강화와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회계부정 책임자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는 최장 5년간(위반 규모, 감안 사유²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상장사 또한 해당 관계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 대상: 위반 동기가 '고의'로 조치된 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
 -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및 회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를 대형 비상장사로 확대



- 자산 5천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사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 횡령·배임으로 소속 임직원에 고소·공소가 제기되면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최대주주 잦은 변경: 최근 3년 내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 비상장사 및 '2회' 이상 변경된 상장사
 - 횡령·배임 발생: 임원이 자기자본의 0.5%(자총 2조원 이상: 0.25%) 이상, 또는 직원이 자기자본의 5%(자총 2조원 이상: 2.5%)³ 이상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고소·공소 대상이 된 대형 비상장사 및 상장사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기존에는 상장사로만 그 대상을 한정하고 3년 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소속 임직원의 횡령이 발생하면 실시하였음.

² 가중 사유는 감사 방해, 불공정거래 관련성 등이며, 감경 사유는 자진 신고 및 협조 등

³ 단, 코스닥 상장기업은 3%임.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 감사인 선정권자¹가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익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더해, 감사인 후보와 일정한 관계²에 있는 경우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는 사유와 의무를 신설함.
 - 제척·기피·회피 사유 예시³: ▲최근 3년 내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감사인 후보(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의 임직원인 경우 ▲최근 3년 내 감사인 후보로부터 일정 금액(예: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과태료⁴ 등 부과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⁵



- 대규모 상장사 감사 회계법인(예: '가' 군)에 대해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칭)'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 위원회 구성: 과반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⁶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 전문가가 맡도록 규정
 - 위원회 기능: 사원총회 부의 주요 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을 사전 심의하는 등 객관적 시각에서 외부 검증·감독 활동 수행
-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지배구조 운영' 현황과 관련된 공시항목 확대⁷
 - 추가 공시항목: 지배구조 구성원, 선출 방법, 회의 참석 여부, 중요 의결 내용, 지배구조 KPI,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역 등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관련 공시 강화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인 외에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별도 컨설팅법인 등)'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까지 포함해야 함.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감원, '26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도 사업보고서에 공시 요구" 참고)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공시 대상 범위 등에 대한 '공시 서식 관련 FAQ'를 [공개](#)함.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

금융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 사항은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힘.

¹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등

² 예: 감사위원장 자녀가 감사인 후보 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이거나, 감사가 감사인 후보인 회계법인에서 상당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³ 관련 입법례 참고하여 규정화 예정

⁴ (참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⁵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⁶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수준의 독립성, 전문성 요건 규정

⁷ 현재는 지배구조 현황만 공시되므로, 주요 의사결정이 감사품질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평가하기가 어려움

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최초 도입...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In Focus

앞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쌍방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그동안 기술탈취 분쟁에서 존재했던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Discovery)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배경

- 그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기더라도 핵심 자료를 가해자인 대기업·원청 등이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옴.
 - 2025년 지식재산처와 벤처기업입증에협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순이었음.
-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이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임. 개정 법안은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법정 외 당사자 신문

-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녹음, 영상녹화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음

법원의 자료 보존 명령

-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관련 위반행위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사람에게 그 자료가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자료보전을 명령할 수 있음

기타

-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건의 실체 파악과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중기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 보호 범위 확대: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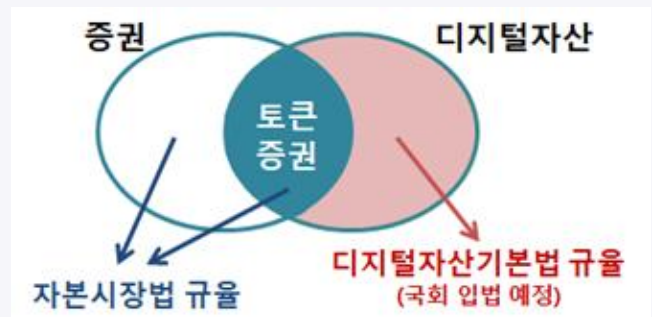
국회, '토큰증권' 도입 위한 개정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1월 15일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을 위한 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023년 2월 금융위가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허용을 위한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밝힌** 후 약 3년 만에 입법이 완료된 것으로, 이로써 분산원장¹ 기반 토큰 방식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본 뉴스레터 2023년 2월호 “금융위, 자본시장법 규율 범위에 ‘토큰증권’ 발행·유통 포함” 참고)

토큰증권이란?

- 발행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 즉, 증권을 종이(실물 증권)나 전자계좌(전자 증권)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일 뿐, 새로운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임.
-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했음.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 체계>

출처: 금융위원회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자증권법: 토큰증권 도입

-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함.
-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기반하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예를 들어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토큰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함.
- 기대효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관리, 스마트 컨트랙트²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됨.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 및 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관리체계

² 스마트 계약이라고도 하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자본시장법: 투자계약증권¹ 유통 허용

- 토큰증권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해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대효과:**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개선이 예상됨.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잠정) 시행될 예정임. 금융위는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²를 구성하여 킥오프 회의를 올해 2월 중 개최하고, 협의체 산하에 ▲기술·인프라 ▲발행 제도 ▲유통 제도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임.



금융위·금감원,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활용 허용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됨.

망분리란 외부 침입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용(인터넷 연결 불가한 내부망 PC)과 개인용(인터넷 PC)으로 네트워크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1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내부망 PC에서 문서작성, 화상회의, 인사·성과관리 등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³를 활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보안 규율 준수를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발표**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¹의 한 종류

²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금투업권, 핀테크업권 등),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³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식. 소프트웨어를 직접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SaaS 방식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이용 가능. (예: Microsoft 365, 인사관리 서비스 Success Factors 및 My HR 등)

배경

- 2013년 금융사 대규모 전산마비 사태 이후 전산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망분리가 업무 비효율뿐 아니라 신기술 활용 저해와 연구·개발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SaaS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금융경쟁력까지 저하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이후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2024년 8월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4년 9월호 "금융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허용" 참고) 로드맵은 생성형 AI 허용부터 디지털 금융보안법 제정 등을 포함해 총 3단계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발표는 그중 1단계 해당함.

망분리 예외 허용 주요 내용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단,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불가
- 정보보호 보안을 위한 엄격한 통제장치 마련: 다음과 같은 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별 1회 평가 후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
 -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만 이용
 - 접속 단말기(컴퓨터, 모바일 단말 등)에 대해 엄격한 보안 관리
 - 중요정보 입력·처리·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통제
 - SaaS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처리나 허용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 접근 통제
 - SaaS 이용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수립 적용 등 규율 마련·운영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사전예고되었으며, 개정이 완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확정 및 시행될 예정임.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 개최...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 제고 목표

1월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TF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금융위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활동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임.

금융위·금감원,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 대상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2일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본격 의무화에 앞서 4월 10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2024년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됨. (본 뉴스레터 2024년 8월호 "금융위, 금융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발표" 참고)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함.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음.

이에 금융당국은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게 ▲금감원의 자문 및 컨설팅 제공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 미흡 시 비조치 ▲시범운영 중 소속 임직원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 및 시정 시 제재 감경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임.

한편, 2월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단계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90%, 전업 카드사 100%가 시범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30조 이상 대형 상장사 FY27부터 공시 의무화 In Focus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28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됨.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ESG 공시 제도화 방안과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함. 발표 내용에는 ESG 공시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그간 관계부처 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이 포함됐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및 시기	[1단계] '28년(FY27) 연결 자산총액 30조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약 58개사) [2단계] 연결자산총액 기준 금액 하향 (예: '29년(FY28) 10조원)
공시 범위	추가 공시 대상 확대는 추후 논의 예정
공시 시점	재무보고상 연결 기준 (단, 첫 해에 한하여 소규모 국내외 종속회사 유예 예정)
공시 시점	3월 말(연말 결산 시점), 8월 중(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제한)
제3자 검증	도입 초기 자율적 인증 → 추후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행위, 자격) 마련 검토
스코프 ³¹	-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1년(FY30)부터 단계적 공시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되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 재검토
공시 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기반으로 마련된 KSSB 공시 기준 첫 번째 세트 의결 예정
공시 채널	-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 - 법정 공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 - 거래소 공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로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위반 시 제재금 및 벌점)
면책 허용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세이프하버) 허용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에 대해 관계부처 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 4월 중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임. 로드맵이 확정되는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힘.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스코프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2: 기업이 구매하거나 획득하여 사용한 전기, 증기, 난방 또는 냉각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지만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배출량을 모두 포함)

한편,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¹ 달성을 위한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계획 ▲고탄소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등이 포함됨.

상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자사주 소각 1년 이내 의무화

2월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지난해 8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포함한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3차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 ▲예외적 보유·처분을 위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함. (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국회, 상법 2차 개정안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참고)

3차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 조항	내용	시행 일정
자사주 소각 의무	-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 부여 - 기존에 보유한 자기주식은 1년 6개월간 소각 유예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외적 보유·처분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 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 예외적 보유 및 처분 가능	

또한 개정법은 예외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에 위반하여 보유 및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¹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함.

환경부, CBAM 도입 지원방안 발표...자문 및 설비 투자 제공 등 15건 포함

올해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00개 사업장 컨설팅 지원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음.

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5건의 CBAM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대응방안은 크게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범주로 구성됨.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제품 생산과정의 설비 투자를 지원함.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와 교육과정 등을 제공함.

또한 내년에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 탄소비용 납부 등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방침임.



과기정통부, 사이버위협 동향·전망 보고서 발표... '26년엔 AI 이용한 사이버 위협 기승 전망

In Focus

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6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2025년의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¹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강화를 위해 마련됨.

Part 1에서는 '2025 하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을, Part 2 '전문가 칼럼'에서는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조직이 준비할 사항과 시사점 등을 다루고 있음. 그중 Part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제	주요 내용
침해사고 신고 현황	- 신고 건수: 2025년 상반기 1034건, 하반기 1349건으로 총 2383건 발생함. 20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기업 침해사고 신고 통계로,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15%, 하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수치임. - 유형별 침해사고 비중: 서버해킹 44.2%, DDoS 공격 24.7%, 악성코드 감염 14.9%
2025년 사이버 위협 분석	-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 인프라에 대한 침해사고: 역대 가장 많은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규모 또한 최대치 기록 - 오픈소스 및 저가형 IoT 생태계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 강화: 오픈소스 저장소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시도와 제조 단계의 보안 미비로 출하 전부터 감염된 저가형 단말기의 대규모 시장 유입 사태 발생 - 랜섬웨어 공격 대상 확대와 기업-고객 연계 공격 강화: 공격 대상이 연구·제조·에너지 분야를 넘어 교육·의료로 확대, B2C 기업을 노린 공격도 다수 확인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 및 AI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 - 서비스 종료(EOS, End Of Service)²와 방치된 미사용 시스템이 해킹 통로로 악용 -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의 취약 요소 공격 증가 -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사이버 위협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향후 AI를 활용한 공격이 현실화되고, 클라우드 환경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또한 AI 기반의 예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힘.

¹ (국내) 안랩, 지니언스, 이글루코퍼레이션, NSHC, S2W, SK윌더스, 플레인비트 (해외) Cisco Talos, Google, Microsoft, Trend Micro, Zscaler 등 12개 기업이 참여 중

² 제품 및 서비스의 지원(유지보수, 기술지원, 업데이트 등)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시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지원 위해 FAQ 배포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AI)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FAQ)을 [배포](#)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 '고영향·생성형 AI' 규제하는 AI 기본법 공포...'26년 1월 시행 예정" 참고)

이날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기업들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했다고 설명함. FAQ는 ▲법 일반 ▲투명성 ▲고영향 AI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음.

인공지능기본법 일반

- 법 적용 대상은?
- AI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는?
- 법을 불이행한 기업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는지?

투명성

- '표시¹ 의무'는 누가 지켜야 하는지?
- 분야별로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예시는?
- AI 사업자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영향 AI

-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 AI 사업자의 의무는?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1월 22일부터 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법률 및 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음.

¹ 사용자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성된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가시적 표시(사람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비가시적 표시(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할 수 있음.

02

해외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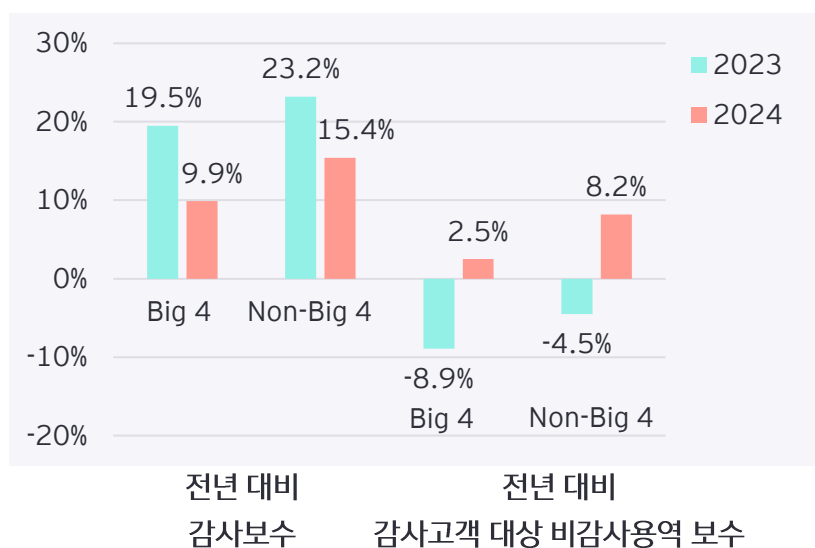
영국 FRC, '24년 회계감사시장 현황 분석...감사보수 지속 성장세 및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품질 격차 관찰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가 2024년 영국 회계감사시장 현황을 분석한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함. 2025년 10월 영국 회계감사업계 관련 통계 및 추세 정보를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상장사를 비롯해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실체(PIE) 감사시장 내 경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함.

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4년 PIE 감사법인 보수 증감 통계¹

감사보수	- Big 4 법인: 전년 대비 9.9% 증가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감 - Non-Big 4 법인: 2023년(+23.2%)보다는 다소 둔화된 15.4%의 증가율을 기록함
감사고객 대상 비감사용역 보수	- Big 4 법인: 전년 대비 2.5% 증가해 기존의 감소세에서 벗어남 - Non-Big 4 법인: 전년 대비 8.2% 증가해 Big 4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1인당 평균 감사보수	- 법정감사인(감사보고서 서명 자격을 보유한 개인) 1인당 평균 감사보수: Big 4 법인은 인당 282만 파운드(약 56억원), Non-Big 4 법인은 인당 155만 파운드(약 31억원)를 기록함 - PIE 고객을 보유한 회계법인 전체 평균: 231만 파운드(약 46억원)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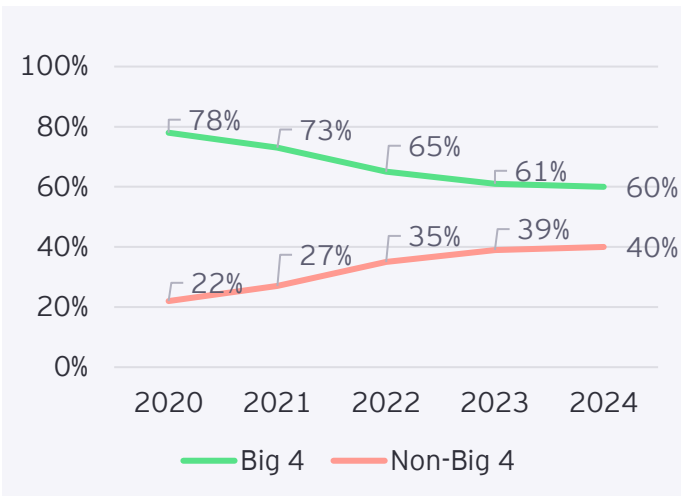
<2023~2024년 영국 PIE 감사법인 연간 보수 증감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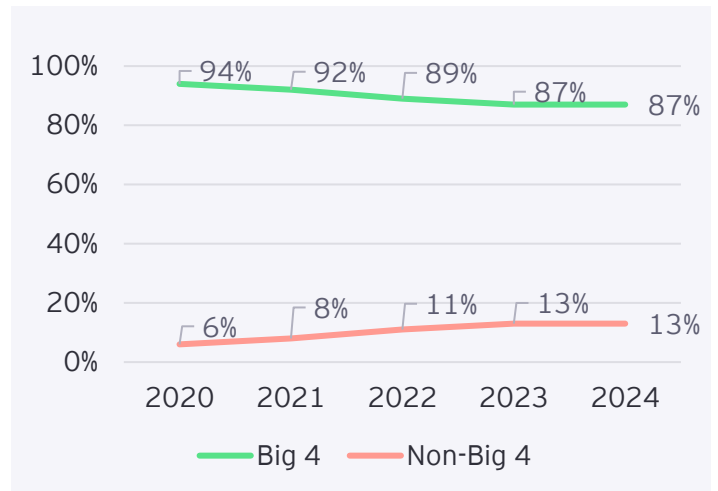
¹ 공익실체(PIE) 감사고객이 있는 회계법인 중 총 34개 법인에 설문을 요청해 31개 법인이 참여함.

2. 2024년 PIE 감사시장 경쟁 현황

전체 PIE 감사 비율	대형 회계법인과 기타법인 간 감사 품질 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체 PIE 감사업무 중 Non-Big 4 법인이 맡은 업무 비율은 2020년 22%에서 2024년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FTSE 350 감사 비율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50대 기업(FTSE 350) 감사업무 중 Non-Big 4 법인이 맡은 업무 비율은 2020년 6%에서 2024년 13%로 증가해 전체 PIE 감사 비율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2020~2024년 전체 PIE 감사 점유율>



<2020~2024년 FTSE 350 감사 점유율>

보고서는 Non-Big 4 회계법인의 PIE 및 FTSE 350 감사시장 점유율이 일부 상승했으나 여전히 Big 4가 지배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FRC는 중소 회계법인들이 감사 역량을 키우고 PIE 감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¹할 방침이나, 중소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을 개선 및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함. <2025년 감사품질평가(Annual Review of Audit Quality 2025)>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PIE 감사시장에서는 대형 회계법인과 기타 회계법인 간 품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임. 2024/25년 감리 결과 6대 회계법인(Tier 1)은 수행한 감사업무 중 감리 표본의 86%가 품질기준을 만족했거나 제한적 수준의 개선권고사항만을 지적받아 최근 5개년간 감사품질 개선세(2023/24년은 74%)를 이어간 반면, 그 외 회계법인(Tier 2, 3)은 품질기준을 만족했거나 제한적 수준의 개선권고사항만 발견된 업무 비율이 38%에 불과했으며 31%는 중대한 개선권고사항이 발견되었음.

FRC는 또한 감사시장이 사모펀드 투자, 인공지능(AI) 및 기타 기술 도입 등으로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기회와 위험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특히 적절한 환경이 갖춰진다면 외부자본 유입이 감사 품질, 역량,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져 감사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힘.

¹ 현재 중소 회계법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감사법인 스케일박스(Audit Firm Scalebox)'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9월에는 중소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시스템(Systems of Quality Management) 투자 및 개발을 약속할 경우 2026~2027년 공식 감리, 감독, 등록 요구사항 등을 완화해주는 '중소 회계법인 역량 강화(Building Capacity for Smaller Firms)'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음.

OECD/G20,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 발표...각국 자체 최저한세 적용 시 면제 가능

1월 5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¹가 다국적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소득을 얻든 최소한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함. 특정 국가가 자체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인 '적격 병행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배경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필라 2)는 다국적법인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로, 한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본 뉴스레터 2023년 4월호 "OECD/G20, 2024년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세부지침 발행" 참고)
- 그러나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시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후 2025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G7)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자체 최저한세 제도가 병행(Side-by-Side)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성명문을 발표함.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 병행 체계 (2026~)	특정 국가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중 소득납입규칙²과 소득납입보완규칙³을 적용받지 않아 해당 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하지 않음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 (2026~)	- 각국이 공장·설비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시행 중인 조세정책(세금 감면, 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실물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함 - 적격 세제 인센티브 예시: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간소화 (2026 또는 2027~)	- 보다 쉬운 적용 면제 여부 판단: 기업은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현행 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과세 유예기간 연장: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전환기 적용 면제 기한을 2027년까지 1년 연장하여 기업이 간소화된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우리 정부는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향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¹ OECD/G20가 주도하는 국제조세개혁 추진 회의체

² 자회사 저율과세 시,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모회사에 과세

³ 소득납입규칙 미적용 시, 동일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구성기업에 과세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확정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계획을 공개하거나 확정함.

일본: 공시기준 확정, 공시 [로드맵](#)¹ 확정



- 공시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한 자체 기준 [확정](#)
- 공시 의무화: 2026 회계연도(2027년 3월 말 이후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프라임 시장²에 상장된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에 최초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
 - 스코프 3 공시는 1년 유예
- 인증 의무화: 공시 2년차부터 스코프 1·2 배출량, 거버넌스, 위험 관리에 대한 제3자 인증 의무화
 - 스코프 3 인증은 초기 의무가 아니며 이후 검토

중국 본토: 공시기준 미정(단, '시범기준' 확정), 공시 로드맵 미정



- 공시기준: 2024년 11월 기본 표준(시범)³ [확정](#), 2025년 12월 기후 공시기준(시범)⁴ [확정](#)
- 공시 의무화: 대상과 시기 미정 (자율 적용 → 단계적 확대 → 장기적 의무화 방향만 제시)
- 인증 의무화: 미정

대만: 공시기준 확정, 공시 로드맵 확정

- 공시기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그대로 도입
- 공시 의무화: 2026 회계연도부터 [상장사](#)(규모별) 및 [금융기관](#)(유형별)에 단계적으로 도입
 - 스코프 3 공시는 3년 유예
- 인증 의무화: 최초 공시 회계연도부터 스코프 1·2 배출량 제3자 인증 의무화
 - 금융기관은 이에 더해 공시 4년차부터 스코프 3 배출량 인증도 단계적 도입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링크된 보도자료에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 [초안](#)을 변경 없이 확정한다고 밝혔으므로, 상세 내용은 이에 따름.

² 시가총액 100억엔 이상, 유통주식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이 소속되는 최상위 시장

³ IFRS S1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초적인 틀이 되는 기준

⁴ IFRS S2 기준에 기반한 기준



필리핀: 공시기준 확정, 공시 **로드맵** 확정



- 공시기준: 자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ISSB 기준을 그대로 도입
- 공시 의무화: 2026 회계연도부터 대형 상장사에 최초 도입, 단계적으로 대형 비상장사까지 확대
 - 스코프 3 공시는 2년 유예
- 인증 의무화: 공시 3년차부터 스코프 1·2 배출량 제3자 인증 의무화
 - 인증기준은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ISSA 5000'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

홍콩: 공시기준 확정, 공시 **로드맵** 확정



- 공시기준: ISSB 기준과 완전한 정합성을 갖춘 자체 공시기준 **확정**
- 공시 의무화: 2025 회계연도부터 대형 상장사에 최초 도입, 2028년까지 대형 비상장사 등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확대
 - 스코프 3 공시는 1년 유예
- 인증 의무화 (3월 30일까지 **의견수렴** 실시 중): 공시 3년차부터 스코프 1·2 배출량 제3자 인증 의무화 제안
 -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ISSA 5000'과 완전한 정합성을 갖춘 자체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HKSSA 5000'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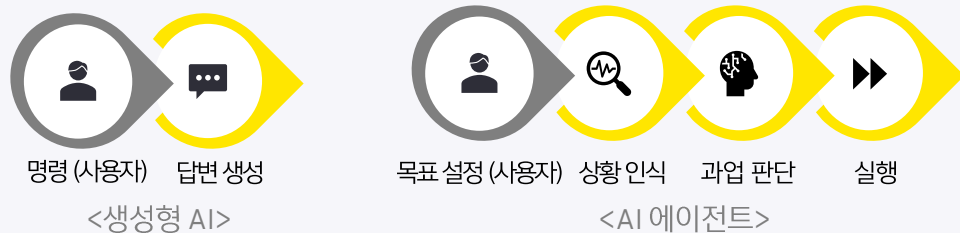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는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함. 공시 로드맵은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4월 중 확정될 방침임.
(본 뉴스레터 내 “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발표...30조 이상 대형 상장사 FY27부터 공시 의무화” 참고)

싱가포르, 스스로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거버넌스 모델 제시...AI 자율성 관리 가능한 범위로 제한 강조

1월 22일 싱가포르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최초로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모형](#)'을 [제시](#)함. 사용자를 대신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의 확산을 전제로, 기업과 기관이 이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모델을 제안한 것.

AI 에이전트란?

- 기존의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여 '대답'하는 AI라면, AI 에이전트는 특정 목표를 기반으로 상황을 인식·판단해 사람 대신 일을 '실행'하는 주체임.



- AI 에이전트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이메일 에이전트:** 온라인 미팅 중 대화 분석 기능을 통해 주요 논의사항을 파악하고 회의 종료 후 이를 자동으로 요약해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거나, 사용자의 일정 및 과거 커뮤니케이션 이력을 분석해 적절한 시점에 회신이 필요한 메일을 감지하고 답장 초안을 생성
 -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 불량률 증가할 경우 불량률을 공정·설비·작업조·시간대별로 자동 분석해 원인을 세분화함으로써, 전 공정에 걸친 전반적인 품질 저하가 아니라 특정 공정 조건과 운영 환경에 따라 불량률이 편중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식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도출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들이 자율적으로 사고·계획·실행하고 협업하는 방식 또는 시스템 전체

실제로 국내 주요 IT 기업은 보안 위험을 이유로 사내 AI 에이전트 엔진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인데, 가이드라인은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대신 추론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므로 민감 데이터 접근 및 시스템 변경(예: 고객 DB 업데이트) 등 전 과정에 걸친 신뢰도·책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를 제안함.

에이전틱 AI 거버넌스 설계

- 사전적 리스크 평가 및 완화:** 적절한 활용 목적 선정, 에이전트에게 '허용할 범위'를 명확한 원칙으로 정의
- 인간의 실질적 책임성 확보:** 중요 의사결정에 인간의 승인이 반드시 요구되도록 핵심 체크포인트 정의
- AI 전 생애주기에 걸친 기술적 통제 및 프로세스 구현:** 기본 성능·안전성 테스트, 금지 목록이 아닌 허용 목록 기반 접근 통제를 통해 '허용된 범위' 원칙 준수를 시스템적으로 구현
- 최종사용자(end-user)의 책임 있는 활용 지원:** 에이전트의 행동과 책임 구조 등에 대한 투명성, 교육·훈련

이를 통해 인간의 최종 통제 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며, 안전·신뢰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03

주목할 간행물



EY: 2026 Global Economic Outlook: growth slows amid supply sh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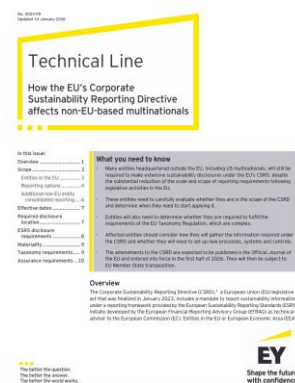


EY의 전략컨설팅 특화 조직인 EY 파르테논(Parthenon)이 발간한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약 3.3%에서 올해 약 3.1% 수준으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침체에 빠지지는 않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보고서는 무역 정책,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생산성, 시장 변동성, 긴축재정 기조, 인구구조 변화라는 다섯 가지 요인이 향후 경제 전망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특히 글로벌 경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의 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함.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회복력과 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적 견고함을 갖추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함.

EY: Technical Line – How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affects non-EU-based multinationals



EY가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EU 외 지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함.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입법 마무리 수순...CSRD·CS3D 규제 대상 대폭 축소” 참고)

특히 EU 외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SRD에 따른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EU 기업에만 적용되는 특정 보고 요구사항도 있음을 강조함.

또한 적용 일정 연기, 적용 범위 축소, ESRS·EU 택소노미 간소화 등 핵심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이에 따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음.

EY: International GAAP® 2026 - The global perspective on IFRS



EY가 전 세계 기업들이 IFRS 회계기준 및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지침서 2026년 판을 발행함. EY 글로벌 회계·공시 전문가들이 집필한 5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회계·공시 이슈를 실제 기업 사례, 예제, 일러스트 등과 함께 설명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IFRS 기준서 적용을 지원함.

2026년 판에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부터 기존의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게 될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의 요구사항, IFRS 9 '금융상품' 및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좁은 범위의 개정사항,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행한 교육자료 등을 포함해 2025년 판 발간 이후 이루어진 업데이트를 반영함.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